

자동차보험 상품요약서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가입대상

보험종류	가입대상
Hicar 개인용 / Hicar 다이렉트 개인용 / Hicar 다이렉트 개인용(CM) / 개인용(공동)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이하) 단, 인가된 학원 또는 자동차학원대표자소유의 자동 차로서 운전교습도로주행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 는 제외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임)
Hicar 업무용 / Hicar 다이렉트 업무용 / Hicar 다이렉트 업무용(CM) / 업무용(공동)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이하)를 제 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Hicar 영업용 / Hicar 다이렉트 업무용 / 영업용(공동)	모든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이륜차 / 다이렉트 이륜차 / 다이렉트 이륜차(CM) / 이륜차(공동)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대상인 이륜자동차
농기계	동력경운기, 크랙터, 콤바인, 기타 동력형·무동력형 농 기계
Hicar 타임쉐어	타인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Hicar 플랫폼 배달업자 이륜자동차보험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를 활용 하여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 타	자동차취급업자, 운전면허교습생,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 ① 대상 :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번
야기하여 보험 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취지 : 인수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자 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

◇ 의무보험 관련사항

① 정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② 보상한도

구 분		보상한도
대인 I	사 망	최고 1억 5,000만원
	부 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000만원
대 물		2,000만원 이상

③ 특 징

- 강제보험성 : 자배법에 근거한 강제보험,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보험회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인 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제한(의무보험의 경우는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중복계약의 경우 등
- 유한보상제
 - 대인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 대물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
 - 피보험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대인배상 I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
| 1.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 한도 내 지급보험금 |
| 2. 대인배상 II : 1사고당 1억원 |
| 3. 대물배상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④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자배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
 - *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⑤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

1) 미가입시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대인 I	대물	대인 I	대인 II	대물	대인 I	대물
10일이내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매1일 초과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자배법 시행령 [별표 5]

2) 미가입운행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보내용

① 대인배상 I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② 대인배상 II

o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사망, 부상, 후유장애
비 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o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무한

o 특징 : 대인 I의 초과손해 보상

③ 대물배상

o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
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직접손해: 수리비용, 교환가액 - 간접손해: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비 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용, 긴급조치 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o 보상한도 : 1사고당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
5억원/7억원(업무용 限)/10억원

④ 자기신체사고

o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
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o 보상한도

구 분	사망/부상/후유장애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	자기신체 사고
	1천5백만원/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천5백만원
	3천만원/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3천만원
	5천만원/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5천만원
	1억원/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
	1억원/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1억원
	2억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2억원
	3억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3억원
자동차상해	5억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
	7억원/1억원/7억원(업무용 限)

⑤ 자기차량손해

o 보상범위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차량과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에 의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o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o 자기부담금 : 고객 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 손해액의 20% 또는 30%

(총 4가지 유형 중 선택가입, 각 유형별 최소/최고한도 존재)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o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o 가입조건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o 특 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

◇ 주요 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장종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통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대인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
의 담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자기차량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

◇주요 특별약관

① 운전자를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과 그 자녀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지정1인 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지정1인 추가 운전자까지 한정하는 특별약관
-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②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특정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연령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2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③ 보험료 납입관련 특별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

④ 기타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양수인이 양도일 이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인 I, 대물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를 대물의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다인승 포함), 경/3종 승합, 경/4종화물자동차이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용 됩니다.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이 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송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개인용 6인승 이하의 일반승용차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 시 보상 특별약관

사고 후 수리기간동안 상대방 보험사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렌트) 받은 차량 운행중 사고 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다. 보험료 분석표

저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 www.hi.co.kr의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험료 산출 기초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예정사업비)로 구성됩니다.

구분		손해율	사업비율	이익률
비사업용	책임보험	78.5	21.5	0.0
	임의보험	76.5	21.5	2.0
사업용	책임보험	86.7	13.3	0.0
	임의보험	81.3	16.7	2.0

주) 오프라인 기준

마.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Q&A

- Q) 의무보험에 미가입시의 불이익은?
- A)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한 채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Q) 음주운전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
- A) 음주운전중 사고 발생시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Q) 일반적인 상품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상품은?
- A)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고보장성 특약을 선택하시면 일반적인 상품보다 확대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혼자만 운전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 A)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Q) 만21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기간도중 연령이 만24가 되었는데 특약변경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 계약에서는 연령특약 변경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 Q) 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특약을 들었는데 동생이 운전중 사고시의 보상여부?
- A) 형제자매는 가족한정특약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Q) 무사고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 A)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보험 갱신시 우량할인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Q) 밤새 주차중인 차량을 누군가 파손한 경의 보상여부는?
- A)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에 따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하사관 이하의 계급에서 운전한 경력이며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군운전경력 확인서’ 또는 병무청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친구의 차량(가족한정특약가입)을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적용되는 바, 상 기와 같은 경우 책임보험은 친구의 차량으로 이외는 본인명의 차량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Q) 가족한정특약과 26세 이상 한정특약을 가입했는데 이 경우 친구가 운전 중 사고시 대물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 A) 친구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배상은 불가능합니다.